



[축산법령] 축산물의 표시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p>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6호) [별표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관련)</p> <p>1. 축산물의 일반기준</p> <p>가.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p> <p>(1) 제품명 (다) (생략)</p> <p>4) (생략)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00향첨가” 또는 “00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11)기타 표시사항</p> <p>(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 [별표12] 제4호 바목 및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7호)</p> <p>4) (현행과같음)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 (합성딸기향 첨가)</p> <p>(타) (현행과같음)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당해 제품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p> <p>(거)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특정의 맛이나 향을 내는 경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을 표현할 수 없다.</p>	<p>•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함</p> <p>• 냉장제품의 냉동 제품 전환시 ‘냉동전환일’ 등 표시사항 보완</p> <p>•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경우 그림 등 사용금지</p>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신설〉

〈신설〉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축산물군	축산물종	축산물유형	1회 제공기준량
일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전란액, 난황액,	50g
	난백액, 전란분,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	가열성형제품,	
	피단	피단	

〈신설〉

(10)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이 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

(11) 국내산 쇠고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13]3.가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정한 등급 의무 표시 부위에 한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비의무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동고시[별표1]1.가.(2)나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축산물군	축산물종	축산물유형	1회 제공기준량
일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전란액, 난황액,	50g
	난백액, 전란분,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	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염지란, 피단	

부 칙(2009.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가목 (1)(다)4)의 개정규정 및 동목 (11)(거), 별표 1 제2호 가목 (10), (11)의 신설규정은 2010.7.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6.28.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 포장육의 등급 표시

• 염지란의 1회제공기준량 설정